

자금운용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제·개정 이유

용어의 정의와 운용상품의 범위를 추가하고 성과평가 원칙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 제·개정 내용

가. 자금운용정책 및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목표수익률, 허용위험 한도, 기준수익률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(안 제3조)

나. 운용상품의 범위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정관에서 정하는 운용방법과 일치시켜 사채, 주식 등을 운용상품 범위에 추가(안 제10조의2)

다. 자금운용 주요 단계(운용-위험관리-성과평가) 중 하나인 성과평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(안 제28조, 안 제29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·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 까지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혁신성과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17층 주택도시보증공사 혁신성과처
- 담당자(이메일) : 최문섭(mschoi@khug.or.kr)
- 전화번호 : 051-955-5348
- 팩스번호 : 051-955-5307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

실무운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자금운용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속한 규정 개정 필요

첨부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1장 총칙 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~4. (생략)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5. (생략) ② (생략) 제2장 자금의 운용 제10조(운용상품의 선정) 운용상품을 선정할 때에는 정관 제68조의 범위내에서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유동성 및 수익성은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. <신 설>	제1장 총칙 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----- -----. 1.~4. (현행과 같음) 5. “목표수익률”이라 함은 자금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금운용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. 6. “허용위험한도”라 함은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감소 등의 불리한 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. 7. “기준수익률”이라 함은 운용자금의 운용성과를 비교·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배분에 사용된 자산의 사후적 실현수익률을 말한다. 8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2장 자금의 운용 제10조(운용상품의 선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10조의2(운용상품의 범위) 정관 제68조에 따라 투자 가능한 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금융기관에의 예치 2. 국채·지방채의 매입과 정부·	자금운용의 근거가 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시 운용상품의 범위를 기금법 및 정관의

현 행	개정안	개정사유
	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. 주식(출자증권을 포함한다)·사채 및 그 밖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인수·매입 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에 따른 자산의 매입	운용방법과 일치시킴
제11조(채권의 매입)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국채, 지방채 2.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3.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권 4.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회사채 ② 채권매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<삭 제>	
제12조(수익증권의 매입)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한다. ② 수익증권 매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<삭 제>	
제13조(자금운용 방법) 자금운용은 내부운용 및 위탁운용으로 구분하며, 정기에금 등 확정금리 상품과 현금성 자금은 내부운용, 실적배당상품은 위탁운용 한다. <신 설>	제13조(자금운용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② 위탁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위탁운용 관리규정 적용 근거 명확화
제4장 위험관리 및 운용실태점검	제4장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	
제25조(위험관리 원칙) ① ~ ③ (생략)	제25조(위험관리 원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

현 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26조(위험관리의 방법) (생략)	제26조(위험관리의 방법) (현행과 같음)	
<제28조에서 이기>	제27조(위험관리 세부사항 등) 자금운용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조문배치 정비
<신설>	제28조(성과평가 원칙) ① 공정 하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 한다. ② 성과평가는 자금운용과 독 립된 부서에서 수행하며, 객관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성과 평가기관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	성과평가 원칙을 정함
<신설>	제29조(성과평가 기준) ① 사전 적으로 자산운용의 방향을 제 시하고 사후적으로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준 수익률을 설정하여야 한다. ② 평가목적에 따라 기준수익률 외 다른 정량 또는 정성적인 평가지표를 평가기준으로 사 용할 수 있다.	성과평가 기준을 정함
제27조(운용실태점검) ①~② (생략)	제30조(운용실태점검) ①~② (현행과 같음)	

현 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28조(위험관리 세부사항 등) 자금운용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<제27조로 이기>	조문배치 정비
제6장 보칙	제6장 보칙	
제32조(공시의범위등) 자금운용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다. 1. 연간 공시 : 자금운용기준서, 연간 자금운용현황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2. (생략)	제34조(공시의범위등)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자금운용규정,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	중요규정을 공시하도록 변경
제33조(세부사항)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	제35조(세부사항) 기타 이 규정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하고, 이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으로서 ----- -----.	세부사항의 범위 명확화
	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	